

- 라. 제8조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함.
- 마. 제10조 민간의 협력과 참여를 촉진키 위하여 재활용 촉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함.
- 바. 제11조 민간에 의한 자율적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
- 사. 제14조, 제15조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 징수절차를 규정함.

3. 검토의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우리 일상 생활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각종 공해문제로 말미암아 시민의 건강과 정서에 막대한 지장과 불만의 요소를 최소화하여 삶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개인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이를 취급하는 업소 등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고 청결하게 하도록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의 책무, 주민의 책무 그리고 위반시에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專門委員 沈玩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 제안이유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에 있어 증거인멸로 처분의 기회상실이 우려될 경우 투기현장에서 과태료 처분통지와 납부고지를 스티커 방식으로 발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골자

-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적발시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
- 이 경우 10일 이내 의견 진술 기회 명시
-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인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발생함을 명시

3. 검토의견

폐기물 무단 투기 등 처분내용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과태료 부과, 징수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처분전에 청문실시로 절차변잡 및 행정 지체와 비능률이 초래되는 바 폐기물 무단 투기 등 경미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적발현장에서 과태료 처분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동시에 부여하도록 규정하여 절차의 번잡과 증거인멸 등 행정 지체의 비능률성은 해소되나 집행에 있어서 직원이 관내 현장을 순찰하여 적발하는 과정에서 마찰 등이 예상되며 인력 배치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

○專門委員 沈玩澤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信祐 예,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質疑順序입니다.

沙下區廢棄物減量과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案과 沙下區廢棄物管理및手數料等에관한條例案 두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具本春委員 예.